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. 7. 26 선고 2016가단5389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7. 7. 12.

판결 선고2017. 7. 2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충남 태안군 D 대 511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단층 무허가 주택 41㎡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

나. 피고들은 공동하여 115,000원과 2016. 9. 8.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3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이세창

별지